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수신 가득한집 외 285개 회원시설
(경유)
제목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일부 지자체 종용 추진에 따른 안내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공통 현안 해결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2019년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정책제안을 통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인 사업자등록제도, 종사자 직접고용, 공개채용 예외제도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428(2019. 6. 18)호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변경 유예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는바, 당초 유예기간(2021. 6. 30)까지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관련하여 지자체를 통해 종용 추진하지 않기로 보건복지부와 약속된 사항입니다.
5.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바, 유예기간 내에 개정 사항 적용을 종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적용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보건복지부 1부.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민관협의 및 의견제안 과정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대결: 12. 7.
담 당: 김 명 중 회 장: 장 명 찬
협조자
시행 한정협 제2020-12-007 (2020. 12. 7.) 접수 (. .)
(우)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006호, 1007호
전화번호 (02)859-3590 / 팩스번호 (02)859-3591 / kpr21@hanmail.net / 공개

보 건 복 지 부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849(2019.02.11.)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3404(2019.6.17.)호

2.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에** 붙임과 같이 **공문 시행**('19.6.17.)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 대책 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쪽, 20쪽, 32쪽	2019.12.31.	2021.06.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쪽	2020.12.31.	

* '21.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

붙임 지자체 발송 공문 1부. 끝.

붙임 2019,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민관 협의 및 의견제안 과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민관 협의

□ 2019년도

- 2019. 3. 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간담회
- 2019. 5. 7 2019 한단협·한종사협 정책토론회(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
- 2019. 6.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간담회
- 2019. 6. 14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 사회복지정책 4대 요구사항 중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에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 폐지 제안(주요 5대 정당 협약체결)
- 2019. 6. 18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가 2021. 6. 30까지로 연장)
- 2019. 8. 2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협의체 1차 회의
- 2019. 10. 2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협의체 2차 회의
- 2019. 12. 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협의체 3차 회의

□ 2020년도

- 2020. 1 ~ 1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방향 모색 지속 협의 중
- 2020. 6. 1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간담회
- 2020. 8. 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안내' 의견 제출
- 2020. 10. 26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의견제안
- 2020. 11. 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관한 입장과 의견 제출
- 2020. 11. 2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일부 개정 사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울시 포함 12개 지자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본 법인의 조치사항 전달(보건복지부장관)
- 2020. 12. 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개정 관련 한단협 의견제안